

음식비 지출 지침서

1. 음식 및 다과비 지출 지침서 시작일:

사역을 위한 모임때 구입하는 Snacks and Meals 지출에 대한 지침서는 2007년 부터 각종 모임때 구입되는 김밥과 만두 대금을 40% 로 적용 지출하다가 2008년 10월 1일 부터 재정부 협조 사항 문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각 사역원에 전달하고 시행하기 시작 하였습니다. 2020 회계연도부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보안 합니다.

2. 알림:

Snacks and Meals 지출에 대한 지침서는 KCPC Web (자료실> 재정(규칙, 지침 및 협조 사항) 에 2008년 부터 올려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회계년도 초기에 사역원 부장 mailbox에 협조 사항문을 넣어 드립니다.

또한 분기 별로 각 사역원 부장들에게 이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.

3. Snack & Meals 지출 적용(사역원 행사 모임):

2020 회계년도부터 일년에 한번 (예, 사역원 kick-off meeting) 사역원 모임에 음식 재료 비를 한 사람당 \$10.00 미만으로 지급합니다 (피크닉 포함). 단 다음세대 교육부 (영아 부 부터 고등부 까지)는 일년에 두 번을 지급합니다.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성경적인 학업 또한 전도를 목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관련된 음식비는 지급하지만 레 크이에디션과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관련된 음식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 Meals & Snacks 지출 청구서에는 모임의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.

4. 지출적용 예외 사항:

A. 외부강사/선교사 식사 대접하신 경우에는 100% 지급됨;

B. 담임 목회자가 주관하는 Care Visitation이나 부 교역자 (전도사 포함)가 주관하는 사역 목적을 위한 Care Visitation 일 경우는 한 사람 당 \$15.00 까지 100% 지급됨;

C. 교직원이 교회 사역을 위하여 개인 비용을 발생하여 경비 상환을 요청 할 때는 일반 지출 청구서 (Request for Payment)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교직원 비용 보고서 (employee expense report – new form in FY 2020)를 작성 사용해 주십시오.

** 선물비 지출 청구서에는 선물의 목적과 수령자의 성함을 기록해 주십시오.